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4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액공제 미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이연회의원안)	3

I. 개요

1.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0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6. 4. 2.
- (3) 회 부 일 : 2026. 4.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4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액공제 미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이연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제58조) ○ 세액공제 규모 -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 세액공제 미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 </thead> <tbody> <tr> <td>1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 <tr> <td>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40/100</td></tr> <tr> <td>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100 + (기부금 - 20만원) × 15/100 (단,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0/100)</td></tr> </tbody> </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40/10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100 + (기부금 - 20만원) × 15/100 (단,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40/10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100 + (기부금 - 20만원) × 15/100 (단,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0/100)								
○ <신 설>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이연회의원안 2026. 4. 2. 발의(의안번호 18041)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광역·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40%를 세액공제하도록 구간이 신설되었음.

□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금의 50%(현행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임.

본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안과 연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

1) 의안번호 제2218038호

제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400억원으로 나타나며, 2026년의 경우 672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규모	400	623	672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우 그 제공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답례품을 선택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세제혜택과 답례품 제공의 이중혜택을 방지하고 조세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20%p의 추가 답례품 제공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동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도 본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에 대하여 지방정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 의안번호 제2218038호

□ 한편, 동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